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0원
- 징수결정액 : 250천원
- 실제수납액 : 248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수납액 : 2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2%(전년도 100.0%)임.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0	250	248	0	0	2	0	99.2
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임시적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기타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 결손액=정리보류+시효완성,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103,491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103,491천원

○ 지출액 : 1,006,679천원

○ 이월액 : 0원

○ 집행잔액 : 96,812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8%(전년도 17.5%)가 발생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0천원, 지출잔액 81,812천원임.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103,491	1,006,679	0	96,812	8.8
사업예산계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853,105	0	92,295	9.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34,116	19,062	0	15,054	44.1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813,144	736,054	0	77,090	9.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7,989	0	151	0.2
일반예산계	158,091	153,574	0	4,517	2.9
기 본 경 비	158,091	153,574	0	4,517	2.9

-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3년도말 민생사범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4,362천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70,607천원으로
- 총 수량 102개, 현재액은 70,607천원임.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은 당초 세입 예산을 미편성했으나, 안심 일자리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종료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금 발생에 따라 '그외수입' 2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4만 8천원을 수납하여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합 계	0	250	248	0	0	2	0	99.2
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임시적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기타수입	0	250	248	0	0	2	0	99.2
그외수입	0	250	248	0	0	2	0	99.2

〈 2023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그외수입	0	250	248	248	99.2%

- ▶ 발생 사유 : 안심일자리, 초단시간근로자 계약종료에 따른 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분 발생
 - 안심일자리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 : 1건 247,530원
 - 초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반환 : 1건 2,460원

- 민생사법경찰단의 세입은 비교적 소액이나, 세입 발생 사안별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로 세원누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불용 과다 사업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4백만원 중 10억 7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8.8%(9천7백만원)로, 전년(17.5%) 대비 감소(8.7%) 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3.4%)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여부,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103,491	1,006,679	0	96,812	8.8
사업예산계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45,400	853,105	0	92,295	9.8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945,400	853,105	0	92,295	9.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34,116	19,062	0	15,054	44.1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813,144	736,054	0	77,090	9.5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140	97,989	0	151	0.2
일반예산계	158,091	153,574	0	4,517	2.9
기본경비	158,091	153,574	0	4,517	2.9

-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44.1%의 불용률(불용액 1천5백5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34,116	19,062	15,054	44.1
사무관리비	10,116	10,062	54	0.53
국외업무여비	15,000	0	15,000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9,000	0	0

※ 불용사유

▶ 국외업무여비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제외(인력개발과-2238, '23.2.6.)로 전액불용

-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1천 5백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에는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액(1천 5백만원, 2021년 제2회 추경) 감액하였고, 2022년에는 하반기 국외공무출장 제한 유지로 전액(1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국외공무출장이 허용되었으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전액(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3년 2월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인력개발과-2309)」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하고, 단순 벤치마킹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15,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10,000	0	10,000 (100%)	15,000	0	15,000 (100%)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2023년 5월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¹⁾을 통해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2022년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처리 했음.
-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7조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생사범 경찰단은 법령에 부합한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특별사범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위한 것으로, 8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7억 3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7천 7백만원(불용률 9.5%)을 불용처리 했음.

〈 “특별사범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범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813,144	736,054	77,090	9.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93	7,614	79	1.0
사무관리비	295,516	281,377	14,139	4.8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878), 제안일 2023년 5월 30일.

공 공 운 영 비	45,145	44,054	1,091	2.4
국 내 여 비	191,760	144,380	47,380	24.7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8,000	18,000	0	0
특 정 업 무 경 비	236,880	225,602	11,278	4.8
재 료 비	15,000	12,727	2,273	15.2
배 상 금 등	900	50	850	94.4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2,250	2,250	0	0

※ 불용사유

- ▶ 국내여비 : 코로나19 이후 출장 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 감소
- ▶ 배상금등 : 참고인 여비 집행 대상은 피의자,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로 단순 피의자 등의 경우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 이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이후 출장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감소 등에 따라 4천 7백만원(1억9천1백만원 예산편성, 1억4천4백만원 집행, 불용률 24.7%)을 불용처리 했음.

〈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2023 국내여비	191,760	144,380	47,380	24.7	코로나19 이후 출장감소 추세 계속 및 온라인 정보활동 증가에 따른 출장감소
2022 국내여비	224,280	97,525	126,755	56.5	자치구 인원감소(25명→21명),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근무 확대 따른 관내현장활동 여비 집행 감소
2021 국내여비	270,720	161,910	108,810	40.2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확대, 외부 출장감소
2020 국내여비	342,000	168,540	173,460	50.7	코로나19로 외부 출장감소 등
2019 국내여비	378,000	314,177	63,823	16.9	집행잔액

- ‘국내여비’의 예산 편성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회계연도에는 전년(2억 2천 4백만원)보다 3천 2백만원 감액한 1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에는 자치구 파견 직원이 증가(’22년 20명 → ’23년 26명)하였음에도 1억 4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0년 50.7% → ’21년 40.2% → ’22년 56.5% → ’23년 24.7%), 민생사법경찰단은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인원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시	자치구	차이
2020년	93	67	26	△ 4
2021년	88	67	21	△ 5
2022년	92	72	20	4
2023년	98	72	26	6
2024년 (4월 30일 기준)	98	73	25	-

※ 출처 :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배상금’은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45만원)보다 증액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94.4%(불용액 85만원)를 불용처리 했음.

〈 최근 4년간 ‘배상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3 배상금	900	50	850	94.4%
2022 배상금	450	360	90	20.0%
2021 배상금	1,000	315	685	68.5%
2020 배상금	1,000	90	910	91.0%

〈 최근 4년간 참고인 조사 건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고인 조사 건수	2	26	49	34

※ 고발 공무원, 양벌규정의 법인대표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미지급 대상

※ 출처 :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규모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결산 실적 및 집행실태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 전면 재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의 높은 불용률 등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4억 3천 6백만원 (전년 4억3백만원 대비 7.6%(3천3백만원) 증액편성)을 편성하고 4억 1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3.94%의 불용률(불용액 1천7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년 (불용률 1.65%, 불용액 66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의 불필요한 증액 및 과다 편성 등은 지양하고, 적정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428,605	367,669	60,936 (14.2%)	402,746	396,120	6,626 (1.65%)	436,053	418,864	17,189 (3.94%)

○ 또한, '사무관리비'의 일부 항목은 당초 편성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중 ‘원고료’는 30만원을 편성했으나 64만 8천원을 집행하여 34만 8천원(216.0%)을 초과 지출하였고,
-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중 ‘기획단속 등 매식비 (106.5%)’, ‘수사활동 경비(109.1%)’, ‘체력단련실 운영(106.6%)’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종이류(175.2%)’ 등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했음.

〈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2023년도					2024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편성액
합 계			436,053	418,864	17,189	96.06	553,63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	계	10,116	10,062	54	99.47	23,591
		강사료	7,560	5,904	1,656	78.10	11,088
		원고료	300	648	△348	216.00	2,088
		책자인쇄(교재)	2,256	3,510	△1,254	155.59	6,865
		교육운영비	-	-	-	-	1,000
		교육중식비	-	-	-	-	2,55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관리비	계	295,516	281,377	14,139	95.22	396,620
		기획단속 등 매식비	14,112	15,040	△928	106.58	17,472
		차량 임차료	156,420	141,889	14,531	90.71	254,328
		피복비(근무복 3종)	36,960	36,838	122	99.67	39,600
		홍보비	20,000	20,034	△34	100.17	20,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31,430	△2,630	109.13	28,800
		압수물 폐기 운영	1,000	275	725	27.50	1,000
		수사팀 운영	30,224	30,451	△227	100.75	30,420
		체력단련실 운영	3,000	3,200	△200	106.67	3,000
		전문수사자문단 운영	5,000	2,220	2,780	44.40	2,000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	1,800	1,800	0	100.00	4,8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800	1,800	0	100.00	4,800
기본경비	계	128,621	125,625	2,996	97.67	128,621
	기본사무용종이류	1,512	2,650	△1,138	175.26	1,512
	소규모수선비	365	113	252	30.96	365
	행정장비 수리비	1,764	990	774	56.12	1,764
	도서구입비	500	437	63	87.40	5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105,120	102,665	2,455	97.66	105,1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8,770	590	96.95	19,360

- ‘사무관리비’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과목이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한 자의적 예산집행은 지양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운용 기준에 부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 필요

- 민생사법경찰단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교육 이수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목표가 90%로 동일하고, 2022년에는 목표(90%)를 상회하는 실적(95%)을 달성하였음에도 2023년 목표는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0%)를 설정하였고,
 - “디지털 수사 지원율”의 경우 2022년 목표(89건)를 상회하는 실적(100건)을 달성하였음에도 2023년 목표를 2022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0건)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하는 행태를 전례답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 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²⁾ 민생사법경찰단은 성과 지표 및 목표설정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율	목표	90	90	90
		실적	97.5	95	91.2
		달성률(%)	108%	106%	101%
디지털 수사 지원율(%)	디지털수사 지원건수/ 압수수색 영장집행건수	목표	-	89	90
		실적	-	100	92
		달성률(%)	-	112%	102%

□ 2023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수사관 전문성 향상 및 인권수사 정착을 위한 맞춤형·체계적 직무교육 실시
 - 기본직무교육 : 상하반기 기본직무교육(2회) ※ 하반기 서울시 전체 특사경 대상 기본교육 포함
 - 전문특화교육 : 수사팀별 특화교육(3회), 온라인 정보활용기법 교육 등 수사관련 교육(4회)
 - 전문교육 기관 참석 : 특사경 법무연수원 과정(4회), 대검찰청 포렌식교육(2회), 특허청 교육(1회) ※ 교육이수율 실적 : 91.2%, 목표(90%) 대비 101% 달성
- 디지털 수사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
 - 방문판매 등 수사분야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건수 : 총 15회 60개 매체 ※ 디지털수사지원율 실적 : 92%, 목표(90%) 대비 102% 달성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2024년 5월 29일, 90면 재인용.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